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02

# 인 천 지 방 법 원

## 제 1 행 정 부

## 판 결

| | |
|---|---|
| 사 건 | 2015구합51266 자동차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
| 원 고 | A |
| 피 고 | [redacted]군수 |
| 변 론 종 결 | 2016. 2. 25. |
| 판 결 선 고 | 2016. 3. 17. |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지역개발채권 매입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194,320원 추징처분, 지역개발채권 1,250,000원 매입처분을 각 취소한다.

##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0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뇌병변장애 1급의 장애인인 B의 아들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1. 27.부터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2. 12. C 쏘렌토 승용자동차(배기량 1995c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B와 공동으로 취득(원고 99%, B 1%)하여 신규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2015. 1. 26. 원고에게 원고와 원고의 모 B가 주민등록표에 세대를 함께 하지 않아 당초부터 취득세 감면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 2,194,320원을 부과하고[1](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250,000원 상당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소 중 지역개발채권 매입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 제1호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는 자 중 조례로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 매입 대상별 금액, 채권등록 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고 각

1) 갑 제1호증의 1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 따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원칙대로 과세한다는 취지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고지한 취득세 감면 추징 고지의 실질은 면제된 취득세를 새로운 부과처분의 형태로 추징하는 추징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27551 판결 등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02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9조 제1항, 제2항, [별표1]에 의하면 1,500cc 이상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등록함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1,250,000원 상당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나,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는 취득세 부과처분에 수반하여 위 지방공기업법 및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도 함께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지역개발채권 매입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현행 주민등록법상 원고와 같은 외국국적의 직계비속은 '주민'으로서 등록할 수 없는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제8조 제2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직계존속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와 같은 외국국적의 직계비속은 장애인인 직계존속과 동거하면서 공동명의로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더라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02

이 사건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헌법 제11조 평등권,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국적의 자유)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그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 취득 당시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모친 B의 각 주민등록지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내거소사실을 신고하였다. 재외동포법 제9조에 의하면 원고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갈음하여 장애인인 B와 세대를 함께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바, 원고는 취득세 면제의 요건을 구비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위헌 여부**

**가) 헌법 제11조 위배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규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지원이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1대에 한해 세제혜택을 주려는 것인바, 이러한 성격의 지원의 범위와 내용 그리고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입법의 목적, 대상자의 현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내지 재정능력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 내용을 형성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자의금지원칙에 입각하여 평등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차별기준의 합리성 유무가 헌법적 정당성 여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02

의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먼저 원고는 단지 자신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개인에게 특정한 이유로 조세 감면을 통한 지원을 하는 경우 그러한 지원은 특정 납세자군의 조세부담을 다른 납세자군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결국 국민이 낸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나라의 국민을 급부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외국인이 그러한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데 기여하였다는 등으로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지원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1헌바139 결정 등 참조).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이 사건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장애인이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5조에는 '세대주나 세대원의 배우자였던 외국인' 또는 '세대주나 세대원의 국민인 직계혈족의 배우자였던 외국인'에 대하여만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이 같이 거주하고 있음을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등에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표에 같이 거주하고 있음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것이 장애인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원고와의 차별 논란을 일으킬 수는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02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나 주민을 수혜 대상자로 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경우 그 정책은 재정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인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없다면, 모든 사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동시에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도의 개선도 그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에도 어긋나게 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추32 판결 참조).

그리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에서도 지방세특례를 정하려는 경우 공익성, 국가의 경제·사회 정책, 조세의 형평성,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직계비속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등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다문화가족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중 특히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바, 이들을 세제혜택의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원고와 같이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권리·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직계비속은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여 이를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제8조 제2항이 평등권에 관한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헌법 제10조, 헌법 제14조 위배 여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02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헌법재판소 2003. 7. 24. 2002헌마522 결정 등 참조).

또한, 우리 헌법 제14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거주와 체류지를 정할 수 있는 자유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개성신장을 촉진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다른 기본권들의 실효성을 증대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자유영역 뿐 아니라 나아가 국외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를 포함하고 덧붙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국적변경의 자유' 등도 그 내용에 포섭된다고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04. 10. 28. 2003헌가18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혜택의 지원은 국가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일방적인 급부에 해당하고 행복추구권이나 국적의 자유 등 자유권의 제한과는 무관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 제8조 제2항이 행복추구권, 국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제8조 제2항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4조에 위배되어 위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02

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먼저 이 사건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이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등을 면제해주도록 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B와 세대를 함께 하지 않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재외동포법 제9조에 의하여 원고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갈음하여 장애인인 B와 세대를 함께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외동포법 제9조(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의 주된 입법취지는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를 거치거나 거래 등을 함에 있어서 주민등록을 소지하지 않음에서 초래되는 신분확인절차 등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문언내용 및 입법취지(외국인 배우자 등과 세대를 함께하는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의 보호), 재외동포법은 동포애 및 국제화의 견지에서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이지, 재외동포에게도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02

여되는 모든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은 아닌 점(앞서 본 헌법재판소 2011헌바139 결정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외동포법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보아 이 사건 시행령 제8조 제2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3. 9. 16.자 2012마825 결정,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712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이 사건 시행령 제8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취득세 등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역개발채권 매입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민성

판사 홍윤하

판사 심우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02

# 관 계 법 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공익성, 국가의 경제·사회 정책, 조세의 형평성,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02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5조(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서식 등)**

② 주민등록표 등본을 교부할 때 다음 각 호의 외국인이 같이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만이 할 수 있다.

1. 세대주나 세대원의 배우자인 외국인
2. 세대주나 세대원의 국민인 직계혈족의 배우자였던 외국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02

③ 제2항 각 호의 외국인이 같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국내거소신고)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新居所)가 소재한 시·군·구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출입국과 체류)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은 최장 3년까지로 한다.

④ 대한민국 안의 거소를 신고하거나 그 이전신고(移轉申告)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허용된다.

■ 지방공기업법

제19조(지방채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조례로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02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 매입 대상별 금액, 채권등록 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9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등)**

①「지방공기업법」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등록, 각종허가,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신청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제9조 제2항 관련)

1. 자동차 신규등록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500cc이상 : 취득세 과표의 4/100. 끝.